

구매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(제9조제1항 관련)

위반내용	관련 조항	제재내용
1. 법 제22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	법 제2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	등록 취소
2. 구매대행업자(그 임직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)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	법 제224조제1항제4호	1차 : 업무정지 20일 2차 : 업무정지 40일 3차 : 업무정지 60일
3.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·상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	법 제224조제1항제4의2호	
4. 구매대행업자(그 임직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)가 영업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222조제3항 및 제224조제1항제4호	1차 : 업무정지 10일 2차 : 업무정지 20일 3차 : 업무정지 30일
5. 등록사항 변동신고를 위반한 경우	법 제224조제1항제4호 및 영 제231조제6항	1차 : 경고처분 2차 : 업무정지 5일 3차 : 업무정지 10일

※ 1차, 2차, 3차의 적용은 동일한 위반내용에 분류된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적용
하되, 위반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내의 기간으로 산정